

은퇴보조금 관련 연회비 시행규정

본 시행규정은 모든 회원들의 은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후생 세칙 제 9 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1. 연회비 은퇴보조금은 목회자 정보 업데이트(가입 신청서로 대신한다)를 신청한 다음 해부터 시작된다.
2. 목회자 정보 업데이트(가입 신청서)를 후생복지 위원회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. 참고: 2021 년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된 해부터 시작된다.
3. 연회비 은퇴 보조금의 수급 신청 시에는 수급 신청서를 후생복지 위원회에 제출하고, 검토 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지출한다.
4. 연회비 은퇴 보조금의 수급 신청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가족, 또는 감독이 신청할 수 있다.
5. 은퇴목사가 연회비 은퇴 보조금을 받는 방법
 - a. 연회비 은퇴 보조금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.
 - b. 사망시 연회비 은퇴 보조금을 받는다
 - c. 불입한 금액(연회비)과 수익금을 100% 지급한다
 - d. 만 15 년 후에는 적립된 연회비와 수익금의 100%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6. 일반회원에 대한 지급 방법
 - a. 연회비 은퇴 보조금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.
 - b. 만 3 년 미만은 지불하지 않는다.
 - c. 만 3 년에서 5 년까지는 회비 원금만 지불 받을 수 있다.
 - d. 만 6 년에서 9 년까지는 적립된 연회비와 수익금의 40%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 - e. 만 10 년에서 12 년까지는 적립된 연회비와 수익금의 60%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 - f. 만 13 년에서 14 년까지는 적립된 연회비와 수익금의 80%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 - g. 만 15 년 후에는 적립된 연회비와 수익금의 100%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 - h. 사망시 적립된 모든 금액을 수령한다.
 - i. 사고나 질병으로 영구적으로 사역을 못할 경우 모든 금액을 수령한다(단,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).
7. 연회비 은퇴 보조금에 가입한 모든 분들은 회원(연회비 은퇴 보조금에 가입한) 또는 회원 배우자 사망시 회원 당 소정의 상조금을 지불한다(2021 년 현재의 상조금은 \$20 이다).
8. 연회비를 납부한 횟수로 년수를 구별하며 미납된 해는 수익금이 지불되지 않는다.
9. 연회비 납기일(매년 1 월 31 일로 한다)내에 납부하지 못한 연회비는 그해 연회비로 적용되지 않는다.

10. 연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연회비 은퇴 보조금이 연장 된다.
11. 연회비를 납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후생복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한 달은 연장 가능하다(후생복지 위원장은 연장신청서를 총회에 제출한다).
12.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은 손실 될 수 있다.
13. 연회비 은퇴 보조금의 관리 비용 발생시, 후생복지 위원장의 허락 하에 지출하고, 총회에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한다.
14. 연회비는 매년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15. 상조금은 매년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.